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등 참조).

2.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甲'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타이어 판매 및 교체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회사임.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 등에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

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A 회사 등은 피고와 사이에 A 회사 등이 음원 권리자와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에 제공된 음원파일이 원고의 공연권 이용 허락 없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으며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에 관하여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판매용 음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가맹점 매장의 공연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의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고, 이는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후에는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및 그것이 해당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바) 파기환송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로서 전자제품 매장 운영자들과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음. 위 매장은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였음.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에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A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A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위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매장 운영자들이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원고의 공연권 이용허락 없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나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고, B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전자제품 매장의 공연 주체는 매장 운영자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점의 유치와 피고의 매출 증대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므로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고,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의 이익이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후에는 피고가 매장 운영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대리점 수나 제품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및 그것이 해당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2026다202200 청구이의 (바) 파기환송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이하 법과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 ·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특별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른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조항의 유효성이 확인된 후에야 원고는 피고를 특별채용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실제 채용 전까지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임금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의 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 사

2026도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차) 상고기각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 등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의미, 2.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을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호), 동물의 사육 ·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동물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동물의 신체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물보

호법의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학대’에 관한 정의규정,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것이므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2).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고통 ·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오로지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전혀 없음에

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체계적·논리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우자였던 갑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갑이 기르는 고양이(이하 '피해 고양이')를 학대하였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고양이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평소 갑이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고양이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러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피해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 고양이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

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제 업무를 한 망인(원고의 배우자)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기계실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피고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 과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두 사업장에 걸쳐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 근무도 불규칙하였으며, 야간근무와 고혈압・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및 망인의 혈압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고혈압 1단계까지 상승한 경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증가한 점,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분진・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육체적 부담이 큰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고객의 항의에 대응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망인이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건강관리를 해 온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한다거나 망인의 신장・체중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의 교대근무 등이 고혈압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두35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차) 파기환송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2. 해당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

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2018. 7.경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원고가 이집트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 2건(이하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을 제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집트 판결문들과 형식이 유사하며,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정의위원회(Committee for Justice)가 운영하는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Justice Watch Archiv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는 등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원고 진술의 일부 불일치도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판결문들의 형식과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두30919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참조).

이처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된 진료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 내지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였음.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으로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접종 당일 스스로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종의 위반 경력이 없고, 원고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두314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의미와 그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정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는 그 제6호 라목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 제공’을 ‘가목 내지 다목(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등 참조).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등 참조).

3.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등 참조).

4.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등 참조).

☞ 스마트기기 부품사인 원고들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거래를 하면서,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 구매주문에 대한 승인 및 부품 선적, 기술지원, 생산을 중단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생산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하였는데, 이 사건 장기계약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공급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원고들의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장기계약의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으로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쟁업체 부품의 채택 계획이 취소・축소되거나 원고들의 부품을 미리 구매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보았음. 나아가 원고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였고, 경쟁업체의 거래기회도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위반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위 약정에 따라 구매한 부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품 대체의 어려움에 비추어 원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공급중단을 통한 계약 체결 강제 등의 사정상 위반행위의 부당성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음. 또한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위 약정에 따라 구매한 부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